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7. 15 선고 2019나1801(본소), 2019나181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7. 15 선고 2019나1801(본소), 2019나1818(반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합20099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변론 종결2020. 6. 17.

판결 선고2020. 7. 15.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가합200990(본소), 2019가합10863(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확장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325,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7.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39,978,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978,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4,791,6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1.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제1심 반소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도 원고가 항소하여 계속 중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부대항소한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참조)].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 3쪽 14~15행(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의 "지급하기로 한다."를 "지불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 5쪽 5행의 "선고받고 .. 계속 중이다."를 "선고받았다. 이에 E이 청주지방법원 2018노4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E이 다시 대법원 2020도66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7. 10.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 5쪽 6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쪽 하4행부터 9쪽 하5행까지의 "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 항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차량을 담보를 제공하고 I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려 하였고, 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긴 점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표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중도금 및 잔금은 자동차 캐피탈 대출하여 중도금으로 정산하고 2017. 2. 28.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단 대출시로 한다."라고 정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

② 위 계약서 문구 중 '자동차'는,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자동차운수사업자인 피고 소유의 차량을 뜻한다.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12억 원이나 되고, 잔금만 10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의 지입차주이자 개인인 원고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따라서 위 잔금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④ I캐피탈에서는 피고의 이사장 E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횡령을 한다는 소문 때문에 향후 E의 범죄 피해자들과 피고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것이 원고의 대출신청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20. 피해자들의 버스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8. 5. 3.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7. 2. 17. 무렵 E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8. 10. 8.자 준비서면이 2018. 10.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 10쪽 4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아래 표 2행의 7,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서 원고가 대위변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1) 이후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거나 2) 위 돈은 원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3) 취지로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1. 30.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11쪽 9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 11쪽 11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 아래 기재된 "1, 에의 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은 위 계약서 작성 과정의 오기로 보일 뿐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착오로 취소된 이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C 차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

1) 갑 제18호증, 을 제16,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31. P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당시 이름은 'M 주식회사'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가 연대보증 하였고, C 차량(이하 'C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9. 11. 18.까지 위 대출금 중 123,196,946원을 변제하여, 대출잔액이 6,803,054원 남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위 대출금 123,196,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제1심에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대위변제한 105,527,821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를 확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 과정에서 Q를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명의 제공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 21호증,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D 차량의 할부금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2.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D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에는 2016. 4. 4.을 기준으로 N 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 채무 49,004,701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위 잔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6. 4. 4.부터 2018. 6. 27.까지 위 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49,004,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3. 2. 원고와 피고사이에 D 차량(47석 버스)에 관한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본조합(피고를 뜻한다)은 "을(원고를 뜻한다)"에 차량 또는 개인의 채권 채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 제4항은 "갑(피고를 뜻한다)" "을"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쌍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이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을"이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갑"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실을 유선이나 문자 우편 통지하고, 즉시 본 조합의 자동차 앞 번호판 회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휴차 신고 등을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16, 19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7, 18호증만으로는 원고가 D 차량의 잔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3. 2. 21. D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차량에 관하여 2013. 3. 5.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자 역시 피고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한 할부금 채무의 채무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잔존 할부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위수탁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약속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된 2016. 3. 2. 원고에게 '원고가 7,500만원 상당의 D 차량을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증서 겸 출자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차량 가액은 위와 같은 할부금 채무를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량 대금 상당액에 해당한다.

④ D 차량이 2010. 4. 30.경 출고(취득)될 당시의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15,318,182원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2016. 3. 2. 신차보다 더 비싼 가격[124,004,701원(= 75,000,000원 + 49,004,701원)]으로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⑤ 피고는 2017. 10. 16. 답변서와 함께 D 차량 관련 할부금 납부 내역(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2019. 3. 18. 이 사건 반소장을 통하여 위 할부금 채무를 청구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조합 월 회비 등 청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으로서 위수탁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합비, 조합시설 이용수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관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 D 차량에 관하여는 2016. 3. 2.부터 2019. 11. 30.까지 45개월 동안의 조합비 등 2,250만 원[= 월 50만 원(= 월 회비 10만 원 + 운송부대시설사용료 25만 원 + 회계기장수수료 10만 원 + 특허(상호) 비용 5만 원) x 45개월], C 차량에 관하여는 2015. 11. 1.부터 2019. 11. 30.까지 49개월 동안의 조합비 등 1,960만 원[= 월 40만원(= 운송부대시설사용료 25만 원 + 회계기장수수료 10만 원 + 특허(상호) 비용 5만 원) x 49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2016. 3. 2.경 피고로부터 D 차량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는 원고가 개인 명의로 여객운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가져간 2017. 2. 17.까지 기간에 한정되어야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도 조합원 1인 월 회비 10만원뿐이다.

2) 판단 가) C 차량에 관한 판단

원고가 C 차량 관련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D 차량에 관한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가 2016. 3. 2. 피고와 D 차량(47석 버스)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조합원가입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고,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수탁계약 제5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의 제반 행정 등 운수사업 관리업무 대행 등의 조합비, 조합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정관 제24조 제1항은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 조합원 1인 월 회비: 100,000원, 4. 운송부대시설사용료(21~47석) 250,000원, 5. 회계 기장 수수료 100,000원, 10. 특허(상호) 비용 보유차량 (사업용) 1대당 50,000원' 등의 비용을 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D 차량에 관한 월 회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위수탁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갑 제4, 14, 19호증,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O도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운송수익금에서 조합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피고 정관에 정한 비용 중 월 회비 1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무소 및 차고지 임대사용료 명목의 운송부대시설사용료 25만 원, 회계기장수수료 10만 원, 특허(상호) 비용 5만 원의 지급의무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에게 D 차량 관련 아무런 특허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명목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그 기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현물출자한 D 차량을 피고가 관리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인 사실, 원고가 2017. 4.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4. 10.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카단50383호로 D 차량을 포함한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7. 4. 13. 위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7. 4. 14. 기입등록이 마쳐졌으며, 가압류결정정본이 2017. 5.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와 같은 가압류 이후 D 차량은 피고의 차고지에 운행정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호증, 을 제17,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늦어도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10.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조 제5항은 '원고 또한 피고에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피고의 경영 등의 손해를

입하지 말아야하며, 만일 원고의 일방 해지 등의 사유로 피고의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조합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종기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7. 7.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부터 2017. 7. 10.까지 16개월 8일간의 월 회비와 운송부대시설사용료로서 8,129,032원[= 800만 원(= 50만 원 x 16개월) + 129,032원(= 50만 원 x 8/3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운송수익금 반환 청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2. 원고와 D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충북 진천군 R초등학교와 사이에 2016년도 통학버스운송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법인통장과 현금 인출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 원고는 위 통학버스 운송수입금 50,490,000원을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29,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2. 17. 충북 진천교육청 R초등학교와 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금액 47,490,000원으로 정한 통학버스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6. 3.부터 2017. 2.경까지 위 R초등학교에 통학운송료 등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을 넘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법인통장과 현금 인출카드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송수익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1,325,978원(= C 차량 관련 구상금 123,196,946원 + D 차량 관련 16개월 8일간의 조합비 등 8,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11.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 피고의 반소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확장한 부분 포함)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위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이승훈

판사권노을

- 1) 피고의 2017. 10. 16.자 답변서 6쪽, 2018. 11. 6.자 준비서면 2쪽.
- 2) 제1심에서 7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된 뒤 제출한 2019. 1. 2.자 변론재개신청서 2쪽.
- 3) 항소심에서 4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된 뒤 제출한 2019. 12. 26.자 참고서면 3쪽.